

(2) 당 현장 정기안전점검 예정시기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추후 공정 실시계획을 확정후 재조정 가능)

점검대상공사		정기안전점검				
		1차	2차	3차	4차	비고
2중시설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2021.3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2021.7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2021.11	초기점검 2022.5	4회
지하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 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2021.2	되메우기 완료후 2021.5			2회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 라 등록된 다음에 해 당하는 건 설 기 계 가 사 용 되 는 건설공사	천공기	천공기 설치 작업단계 2021.1	천공기 사용 중기 작업단계 2021.2	-	-	2회
	항타 및 항발기	-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사용 초중기 작업단계 2021.3	타워크레인 사용 중후기단계 2021.8	-	-	2회
5의2, 제 1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작업발판 일 체형 거푸집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 초중기 작업단계 2021.7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 중후기 작업단계 2021.10	-	-	2회
	높이가 5미 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작업단계 2021.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작업단계 2021.7	-	-	2회
	높이가 2미 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 공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단계 2021.2	흙막이 지보공 중기 작업단계 2021.3	-	-	2회
	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비계	-	-	-	-	-
	동력을 이용 하여 움직이 는 가설구조 물(리프트)	-	-	-	-	-

* 국토해양부 고시 2010-1047호에 의거 전체 공사기간 중 정기안전점검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해당공종의 건설기계의 설치·해체·전도방지 대책 등의 내용 포함 현장점검 실시 예정

*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